

계약사무 시행세칙 개정안

1. 제안이유

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법규담당 부서장, 외부위원 및 전문직원을 포함하며 심의위원에 대한 심의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「계약사무 시행세칙」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및 심의회 위원 구성 변경
(안 제11조, 12조)

1) 2013.11.18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근거법령인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이 개정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종전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 바뀜에 따라 제재처분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분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법규담당 부서장 및 외부위원을 포함토록 함.

2)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직원을 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[인사관리처-3051(2013.5.23)]

나. 심의위원에 대한 심의수당 지급근거 마련함(안 제16조)

계약사무 시행세칙 일부개정안

계약사무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 및 10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·취소·변경에 관한 사항. 다만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2조 제1항 중 “9인”을 “7인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(중전의 제2항)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6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담당팀장”을 “담당부장(팀장)”으로 한다.

- ② 위원장은 계약업무 담당부문장(본부장)으로 한다.
- ③ 위원회는 계약부서장, 법규담당 부서장, 사업주관부서장, 설계업무총괄부서장, 시공업무총괄부서장, 제안부서장 그 밖에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거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부서장(전문직원을 포함한다) 중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3인 이내의 외부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.
 1. 제11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
 2.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⑤ 외부위원은 중앙부처 계약담당공무원,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, 그 밖

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
로 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수당지급) 공사는 위원회 위원에게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201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【계약사무시행세칙 개정 신·구조문 대조표】

현 행	개정안	개정사유
제11조(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계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1. 계약사무규칙 제7조에 따른 계약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2.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0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대한 취소·변경에 관한 사항 3. 그 밖의 계약업무 중 심의를 요하는 사항 제1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회는 계약업무 담당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계약부서장, 사업주관부서장, 설계업무총괄부서장, 시공업무총괄부서장, 제안부서장 그 밖에 해당 심의 안전과 관련이 있거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11조(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계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1. 계약사무규칙 제7조에 따른 계약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2.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 및 10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·취소·변경에 관한 사항. 다만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 3. 그 밖의 계약업무 중 심의를 요하는 사항 제1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장은 계약업무 담당부장(본부장)으로 한다. ③ 위원회는 계약부서장, 법규담당 부서장, 사업주관부서장, 설계업무총괄부서장, 시공업무총괄부서장, 제안부서장 그 밖에 해당 심의안전과 관련이 있거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부서장(전문직원을 포함한다) 중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3인 이내의 외부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. 1. 제11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.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	·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 개정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 바뀔에 따라 처분 시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. · 자구정리 · 공정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규담당 부서장 및 외부위원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키고, 전문성 및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직원을 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[인사관리처-3051(2013.5.23)]

현 행	개정안	개정사유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. < 신 설 >	<u>인정하는 경우</u> ⑤ 외부위원은 중앙부처 계약담당공무원,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, 그 밖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부서의 담당부장(팀장)이 된다. 제16조(수당지급) 공사는 위원회 위원에게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	· 자구정리 ·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근거 마련